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환경재해에 의한 호흡기 피해 보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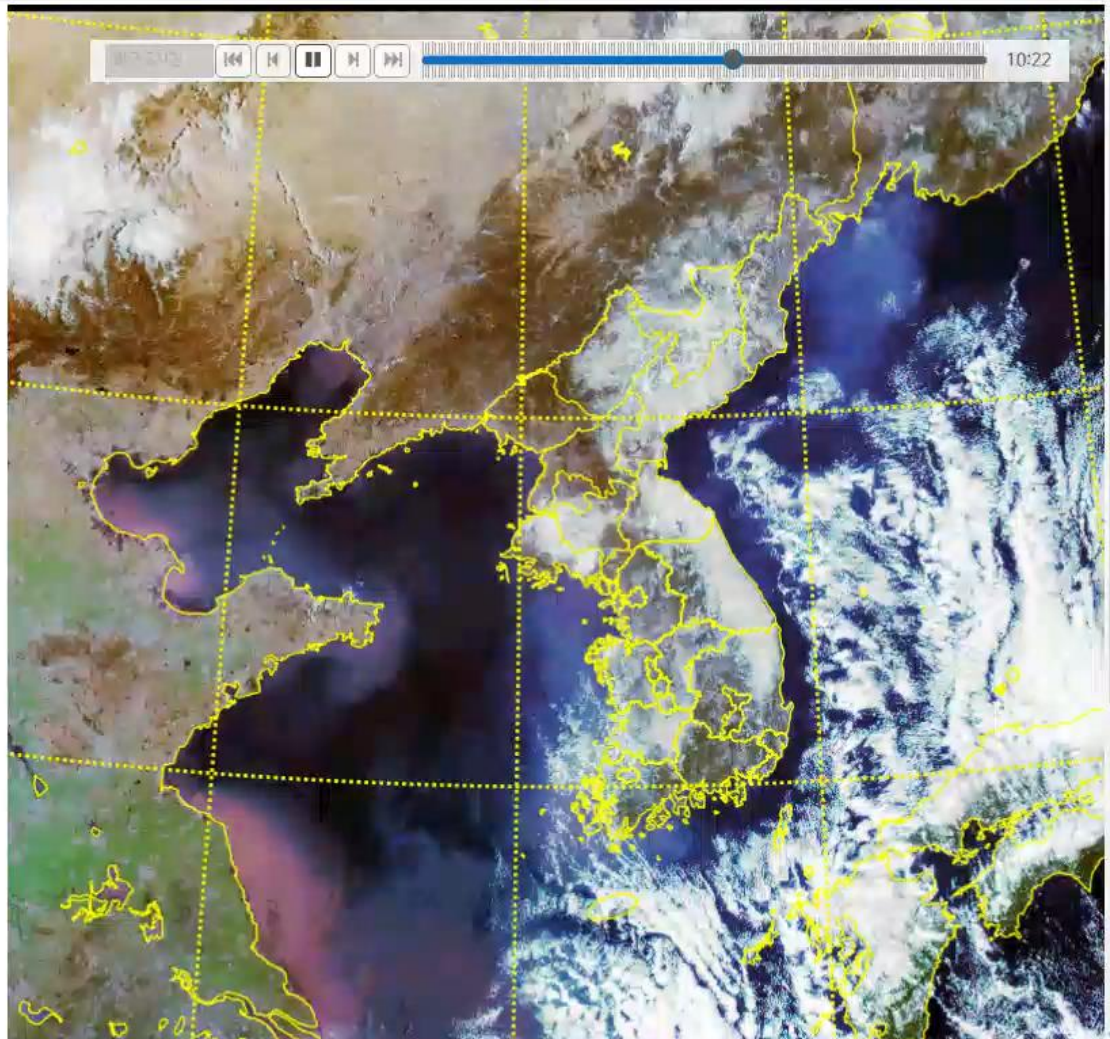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M.D, MPH,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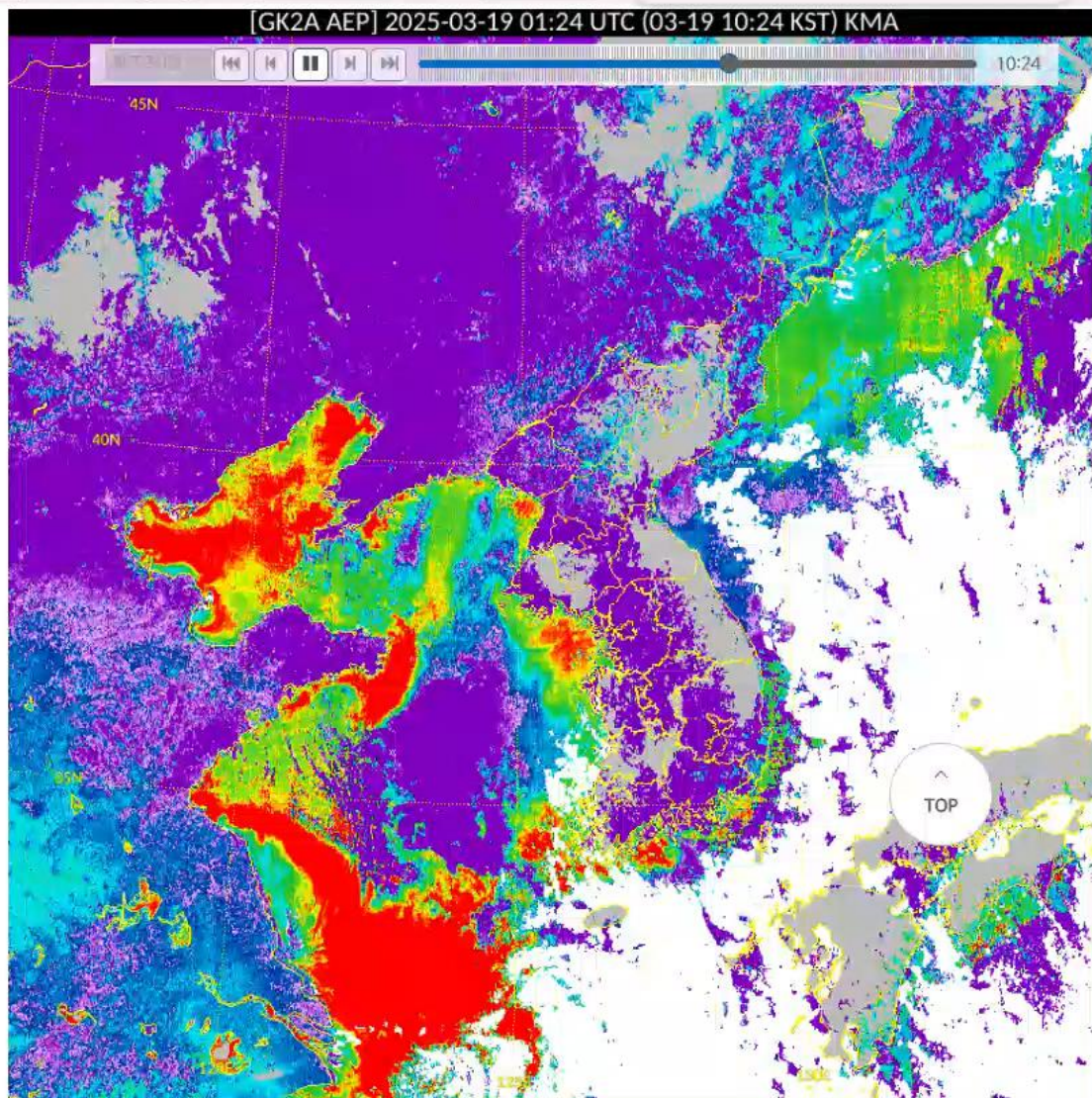


천리안위성 2A호 - RGB 천연색(AI)

2025-03-19 10:00 KST NOW 위성 천리안위성 2A호 자료레벨 기본영상 자료종류 RGB 천연색(AI) 영역 한반도 도움말



[GK2A AEP] 2025-03-19 01:24 UTC (03-19 10:24 KST) KMA



환경과 호흡기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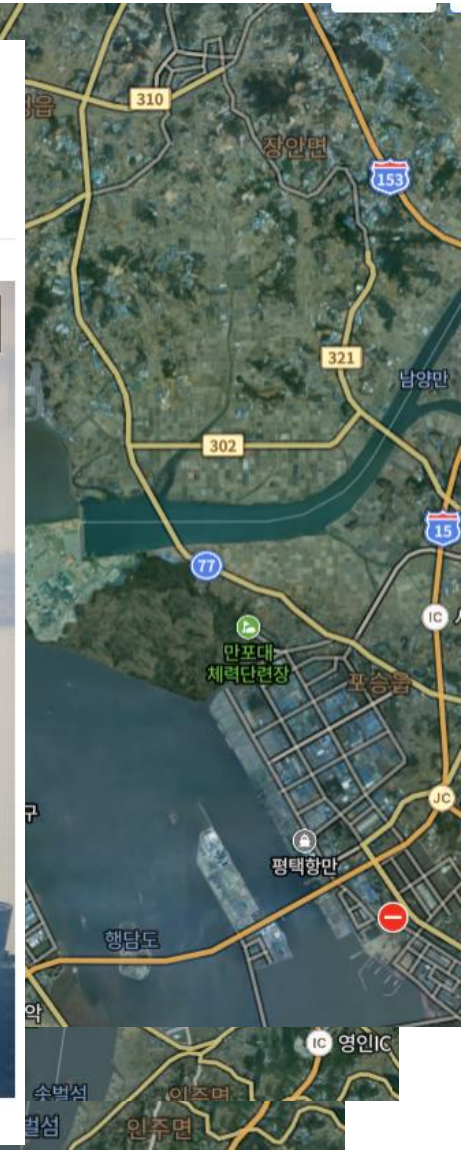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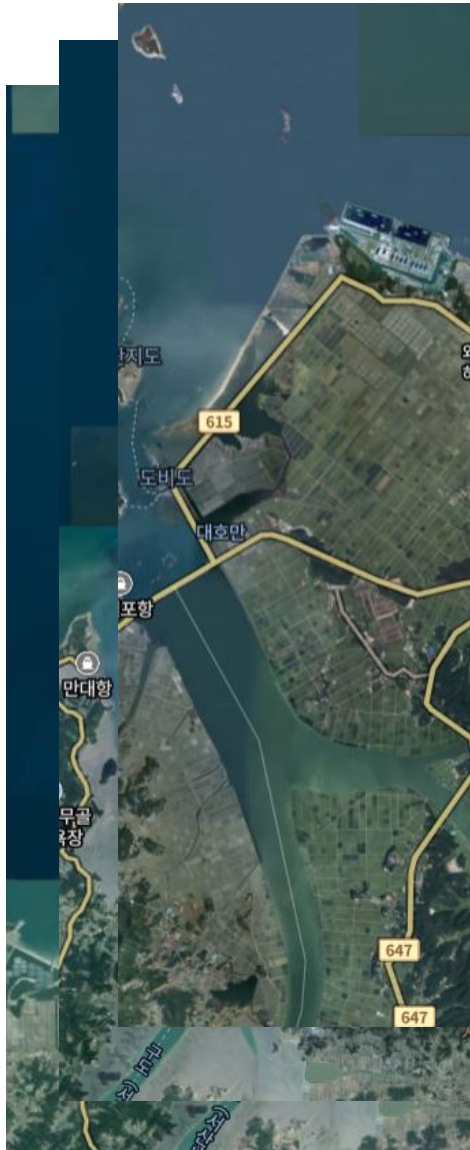
우리가 아는 환경이란?

충남발 미세먼지에 빨난 평택시... "저감조치 권유"

송고 2018-03-08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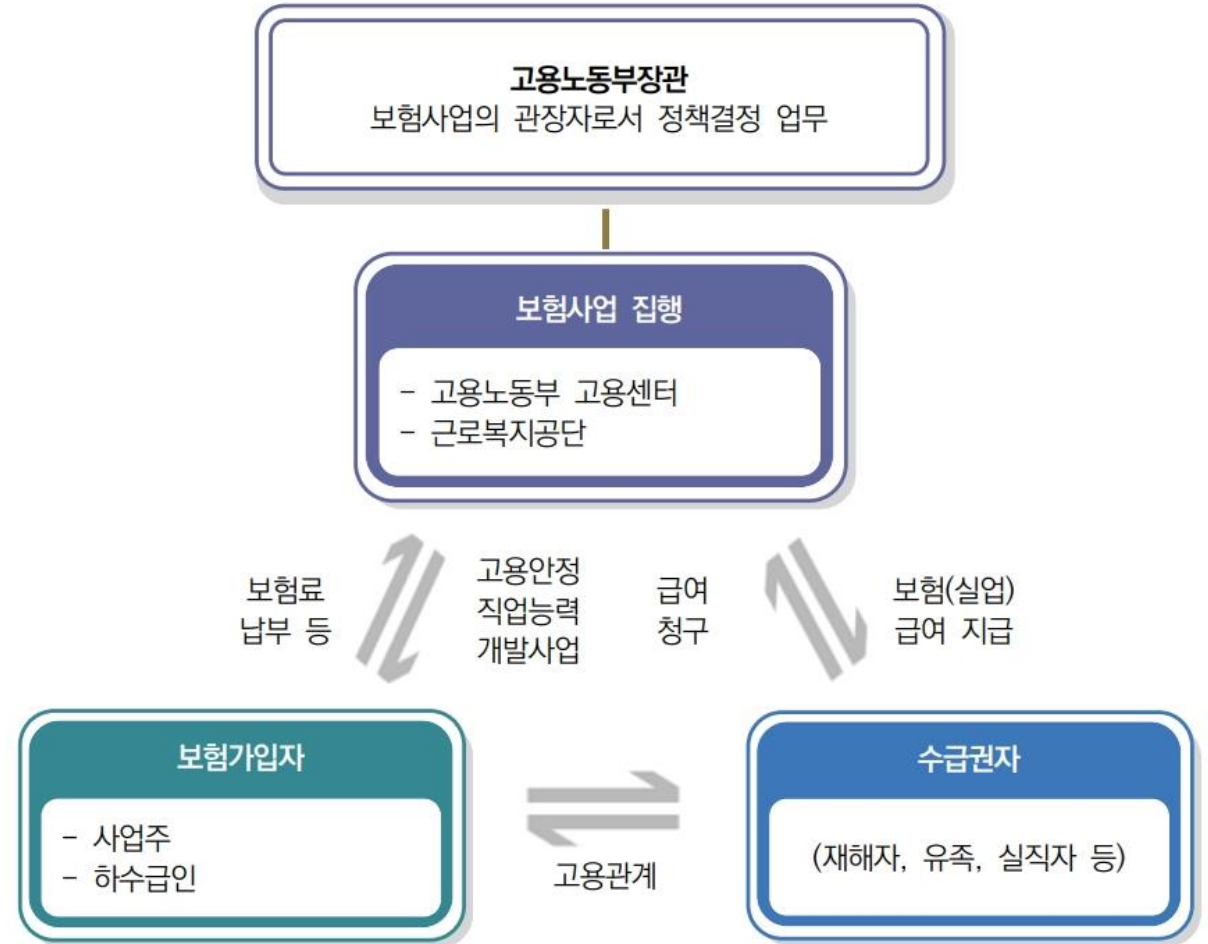


미세먼지에 갇힌 서해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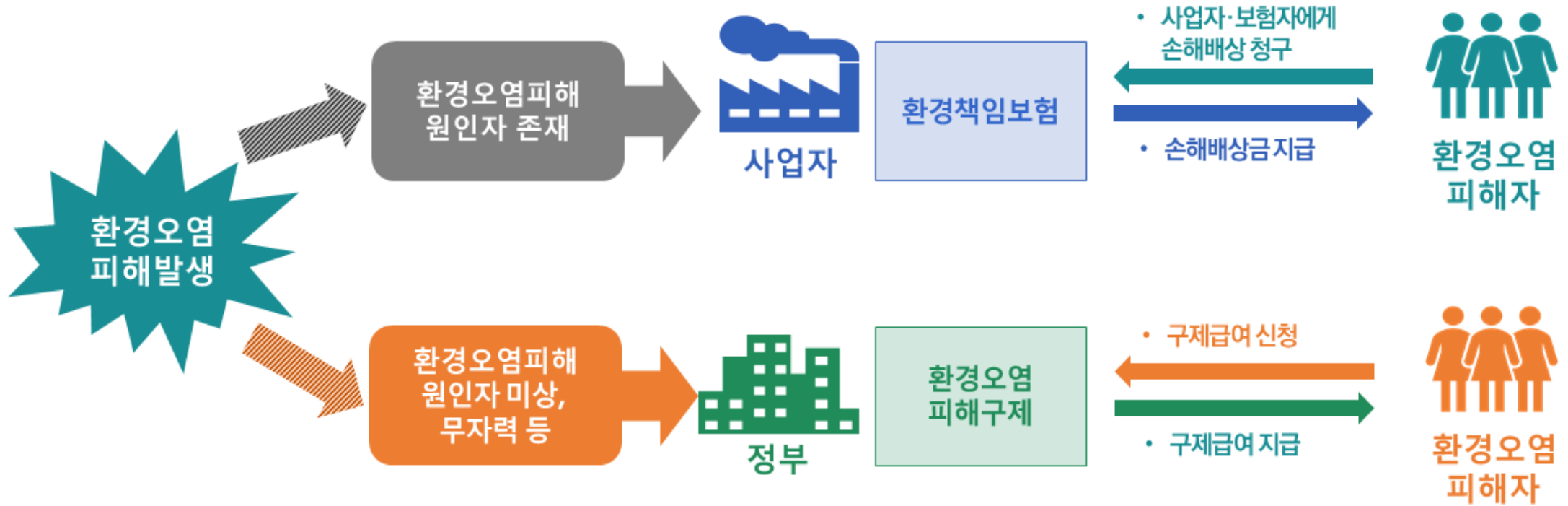


직업환경 노출과 질환발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
 - 산재 가입
 - 4일 이상의 요양 치료 필요
 - 업무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증명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주요 환경오염 피해구제 체계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생물제품피해구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의미하여 제품 오남용은 해당되지 않음

환경피해구제

- 환경오염피해구제

- 원인 불명, 부존재,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 초과사고에 대해서 환경오염 피해 전부 또는 일부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급여지급

환경오염피해 대상 환경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舊장항제련소

- 1936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설립
- 동제련 과정 →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들을 고온의 증기나 입자상 오염물질로 방출하여 토양이나 수계에 환경적 영향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배경

- 연혁

- 1936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설립
- 1989년 환경 공해로 인해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전환
- 1996년~2006년 수차례 토양오염 측정
- 2017년부터 추진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시범사업
- 2019년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납, 비소, 구리, 니켈, 아연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참고기준이 추가 제시되었고 이를 통한 피해구제
- 2023년 1월 舊 장항제련소 지역 LS일렉트릭(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
 - 9월 주민설명회 이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 → 2023년 11월 30일 기준 8,000명을 초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구원 토양오염 정밀조사 (07')

(단위: mg/kg)

항 목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우려기준	대책기준
카드뮴	1.5	4
구리	50	125
비소	6	15
납	100	300
아연	300	700
니켈	40	100



환경오염 노출 등 영향범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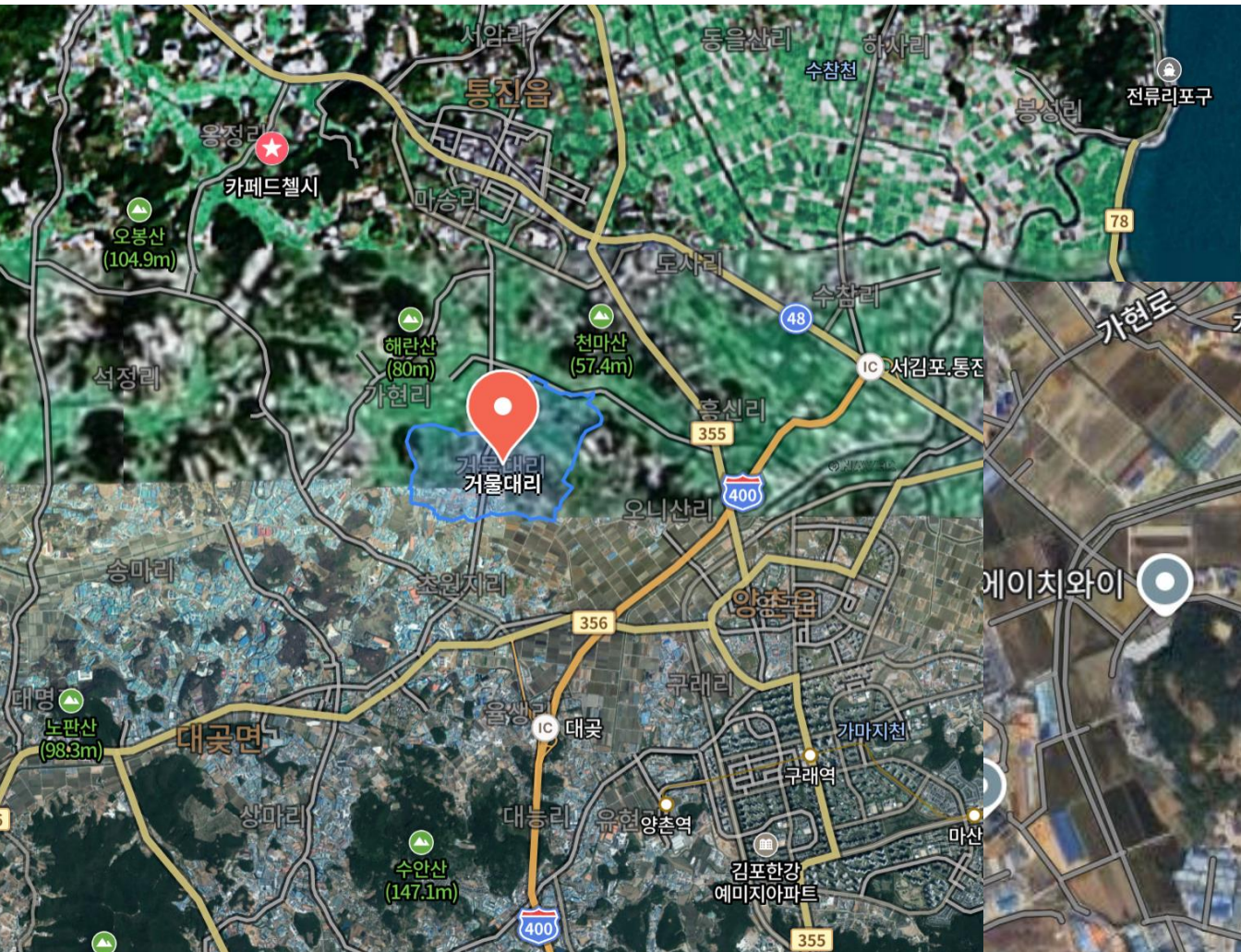
- 오염원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따라 건강영향의 경중도가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오염원과 가까울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오염원의 생체농도와 이로 인한 환경피해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안)(환경부, 2009)에 따르면, 제련소를 중심으로 오염원 반경 1.5km까지 카드뮴, 구리, 납, 등 6개 항목으로 오염되었고, 1.5km~4km까지 비소로 오염되었음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상태>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오염상태
0.5km 이내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6개 항목이 심토까지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초과
0.5km ~ 1.0km	비소, 구리, 납, 니켈, 아연 등 5개 항목 기준초과
1.0km ~ 1.5km	비소, 니켈 등 2개 항목 기준초과
1.5km ~ 2.0km	비소 1개 항목 기준초과(일부 중간, 심토까지 오염)
2.0km ~ 4.0km	비소 1개 항목 기준초과(대부분 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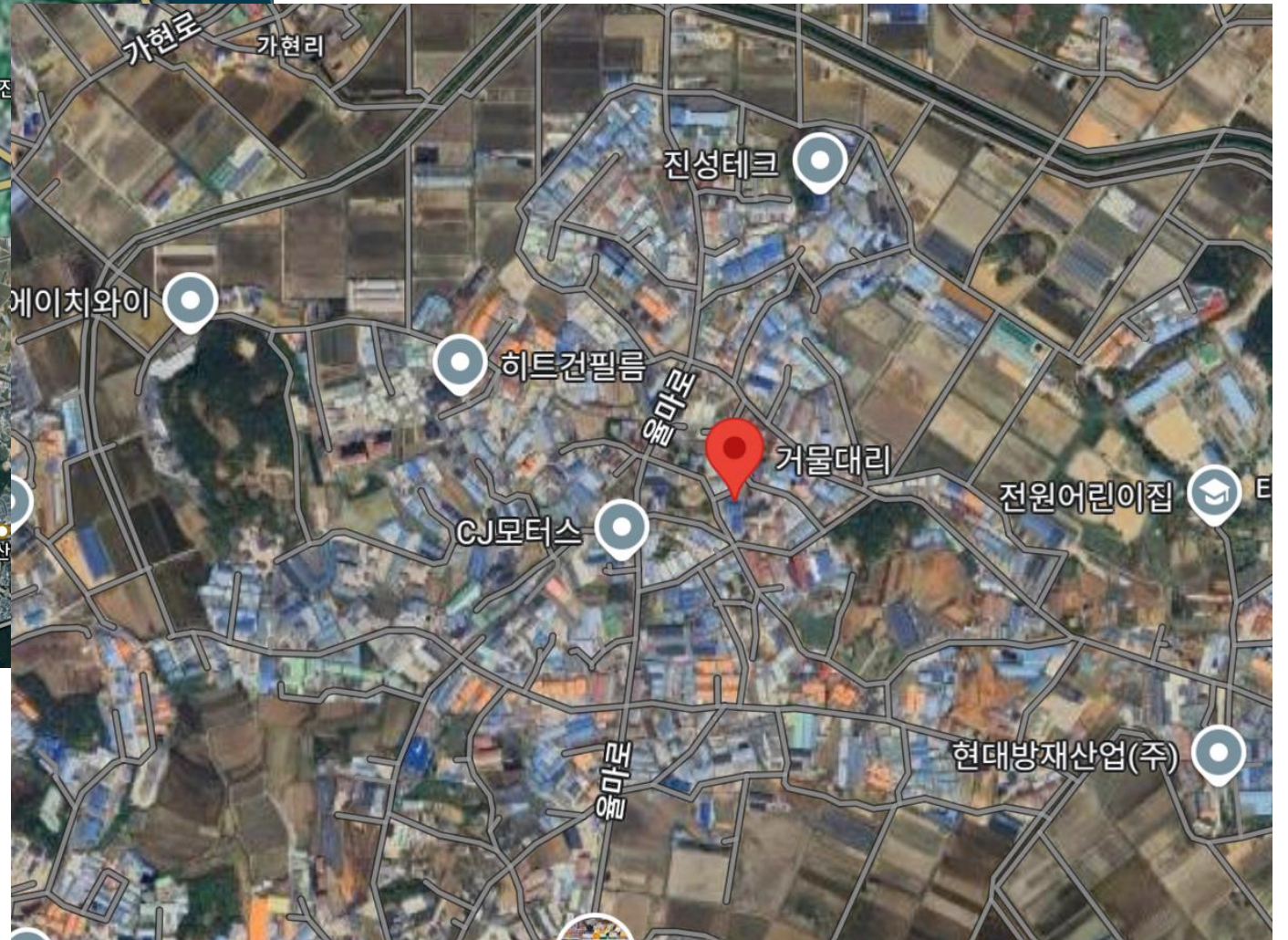
김포 거물대리 공장밀집지역





네이버지도

구글지도



• 환경부 특별점검 시행시 유해물질 배출 업소 단속결과

◇ 1분기 특별단속(김포 거물대리) 결과 위반 업소

협영·신펜엔지니어링·진테크·유진리프트게이트·제일산업개발·신우산업·경민테크·우영테크·두성TNS·세일기계·멘토코리아·바이하츠·발산코퍼레이션·성원플라스틱·화인테크·반도산업사·도성산업기계·씨엔티코리아·강원화학·금강체인공업·진영산업·수연라이팅·태경산업·대성연료·신일포장산업·KP중전기·대성화학·규림금속열처리·준성기업·대원통상·부성금속인쇄·창조산업·태훈가구·경운·건우기업·에너지원·남산금속·세창산업·한스에이디·대원다이캐스팅·신태양·삼성산업·창우케미칼·신김포·현대자동차공업사·우담라이팅·88자동차 정비공업사·덕진·삼오정밀·정원기업·동명테크·아름다운주유소·수성플라텍·조일공업·평창산업제2공장·삼진주작·하나금속·태성특수금속·강원특수산업·삼형금속·보현메탈·대유금속·하이테크캐스팅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구분	항목	측정값	비고
토양 중금속	크롬	112 mg/kg	
	니켈	84.3 mg/kg	피해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 확인
	구리	63.0 mg/kg	위치에 따라 오염 확인
	아연	184 mg/kg	위치에 따라 오염 확인
	비소	7.89 mg/kg	위치에 따라 오염 확인
	카드뮴	0.37 mg/kg	
	납	119 mg/kg	위치에 따라 오염 확인
대기 중금속	크롬	수도권 대비 2.5배	
	니켈	수도권 대비 1.7배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결과

질병 분류	주요 질환	위험도 증가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염, 비염 등	비교위험도 증가
피부 및 눈 질환	피부염, 결막염 등	비교위험도 증가
순환기계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치료유병비 증가
내분비계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등	치료유병비 증가
악성종양	폐암, 위암, 간암 등	표준화발생비 증가
신경정신계 질환	파킨슨병 등	비교위험도 증가

구 분	계	대구안심연료단지	구)장항제련소	김포거물대리
오염시설	-	연탄공장 등	구리제련소	주거-공장 혼재
인정질환	-	진폐증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 질환 및 골다공증 기타 중금속 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폐암, COPD; 기관지염, 폐기종)	호흡기, 눈·귀, 순환기, 내분비, 피부 질환 등

인정기준 관련

구 분	구제급여 지급요건 판단기준(안)	설정사유
노출기간	1936년 ~ 2009년까지 거주한 사람	제련소 설립시점('36년)부터 토양정화사업 시행시점('09년)까지
거주력	노출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 1.5km 이내에 거주한 사람은 가중치 고려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지역임을 고려
영향범위	(구)장항제련소로부터 4 km 이내에 거주한 사람	토양정화사업 범위를 고려
인정질환	환경오염피해인정 후보질환 52종과 관련한 치료이력이 있으면서 3가지의 예외사항 을 만족하는 경우	선지급 신청자 45명이 보유한 1,049종의 질환 중에서 구리, 납, 니켈, 비소 관련 질환

□ 피해구제 인정 현황

구 분	신청인원	판 정				조사중
		인정			미인정	
		계	생존	사망		
계	8,768	567	497	70	120	8,081
대구 안심연료단지	14	6	5	1	8	-
서천 (구)장항제련소	8,544	365	321	44	101	8,078
김포 거물대리	210	196	171	25*	11	3

□ 건강피해등급 현황

구분	인정자 (A+B)	계 (A)	생존								사망 (B)	
			피해등급									
			평가완료									평가* 준비중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외			
합계	567	506(6)	214	8(1)	22(2)	33(1)	51(1)	20	80(1)	292	61	
김포	196	173(2)	99	1	6	7(1)	21	10	54(1)	74	23	
서천	365	328(4)	115	7(1)	16(2)	26	30(1)	10	26	213	37	
대구	6	5	0	0	0	0	0	0	0	5	1	

※ () 건강피해등급 평가 완료 후 사망자

* 의료기관 보완자료 제출 안내 및 정밀검진 참여 안내

급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급여 종류	급여 내용	형식	피해등급	지급대상
의료비	본인 부담 의료비(실비)	연간 신청	비연동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치료·요양 및 생활비 지원 (중위소득(2인) × 4.75~47.5%,	월급여	연동	피해자
유족보상비	유족에 대한 보상 (장의비의 250~1500%,	일시금	연동	유족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의비용 지원 (중위소득 1,000분의 897,	일시금	비연동	유족
재산피해보상비	재산피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지원	일시금	비연동	피해자, 유족

등급	기준	요양생활수당(중위소득의 %)
1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가 90점 초과 100점 이하	별표 참고
2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가 70점 초과 90점 이하	별표 참고
3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이하	별표 참고
4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가 30점 초과 50점 이하	별표 참고
5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가 20점 초과 30점 이하	별표 참고
등급외	중증도 평가 점수가 20점 이하	미지급

피해인정자 피해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신체증상	피해인정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정신적인 증상의 정도(평가 시점 기준)
합병증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평가 시점 기준)
예후	피해인정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
치료예정기간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별표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의 환경오염피해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피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급	등급 외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원/월)	1,868,0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896,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448,32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186,8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유족보상비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피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급	등급 외
유족보상비 지급액 (원/월)	52,913,850원 (장의비의 1,500/100)	38,097,970원 (장의비의 1,080/100)	26,456,920원 (장의비의 750/100)	17,637,950원 (장의비의 500/100)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함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을 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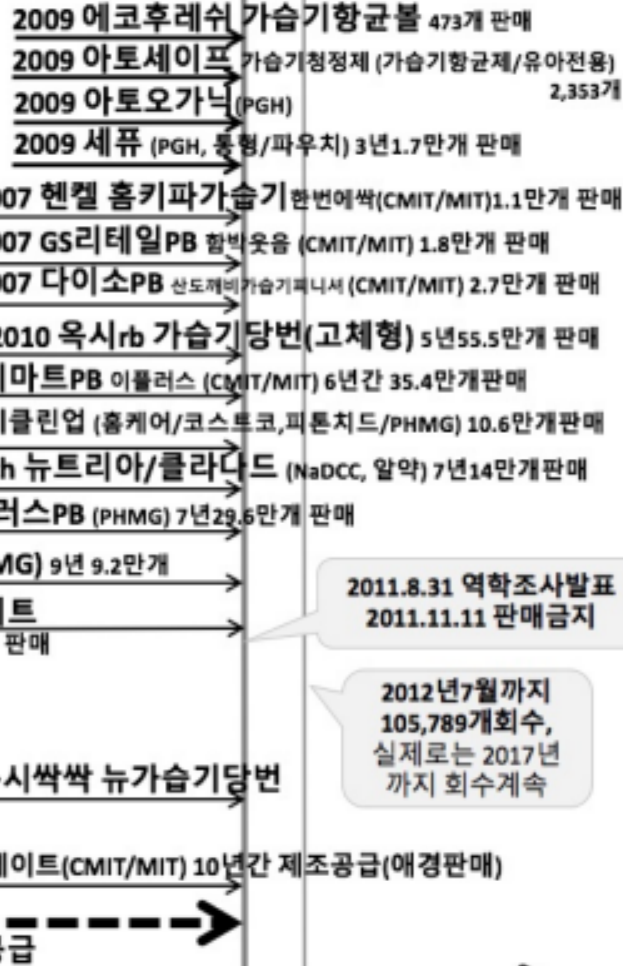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현황

• 가습기살균제 43종류, 998만개 판매현황

- 오른쪽 24개 제품 성분, 판매량, 시기 등 파악
- 아래 9개 제품 판매량 파악
 - 롯데마트 가습기파트너(주부사랑 1.6만개, 와이올렉 1.7만개)
 - 모던라이프 가습기살균볼 스틱형 3만개
 - 하이지어(담채형, 수입/필터용) 14,616개
 - 엠텍 이코볼 살균필터 3,840개
 - 신희/고려케미칼 '홍위시 가습기세정제' 1,200개
 -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 부산 사망자 사용제품 500개
 - 웰버스 에어가드 리퀴드(인터넷판매) 22개
- 아래 10개 제품 성분, 판매량, 시기 파악 안됨
 - 2002년 판매확인: '써브라일'(한방 가습기보충액)
 - 2005년 판매확인: 한국파르푸PB '가습기세정제' (주)에디션
 - 2005년 판매확인: 연희산업 '닥터OK안정가습'
 - 항알레르겐(미국수입)
 - 바이오피론 가습기살균청소(인터넷판매)
 - 동산씨앤지 동산가습기메이트
 - 청풍 청풍무구 가습기살균제
 - 호산 베지터블가습기클린업
 - 사인업 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
 - 가습기무균



2011.8.31 역학조사 발표
2011.11.11 판매금지

2012년 7월까지
105,789개 회수,
실제로는 2017년
까지 회수 계속

1994 2000 2005 2011 2012 2018

배 포 일	11월 11일 / (총10매)	담당부서	전 화
과장 / 담당	나성웅 / 김한숙	질병정책과	02-2023-7550 02-2023-7552
	윤승기 / 곽진	역학조사과	043-719-7190 043-719-7192

6종 가슴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 동물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 확인 -
- 향후 실험예정인 모든 가슴기살균제도 사용중단 강력 권고 -
- 모든 가슴기살균제, 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

<붙임 1> 수거 명령 대상 6종 정보

순번	제품명	제조업체	연락처	성분명	제품사진
1	옥시썩썩 New 가슴기당변	(주)한빛화학	043-882-1601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2	와이즐렉 가슴기살균제	올마산업사	041-665-0982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3	홈플러스 가슴기청정제	올마산업사	041-665-0982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4	세퓨 가슴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 이펙트	080-090-0605	Oligo(2-12-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5	아토오가닉 가슴기살균제	아토오가닉	070-4349-1197	Oligo(2-12-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6	가슴기클린업	(주)글로벌엔업	063-263-0001	Polyhexamethyleneguanidine hydrochloride	

'가슴기살균제' 제품들

당시 어떤 제품을 썼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판매되었습니다.



옥시썩썩 가슴기당변 (1995~2011)



유공, SK, 애경 가슴기메이트 (1994~2011)



LG생활건강
119가슴기 세균 제거제
(1997~2003)



이마트 PB
E PLUS 가슴기살균제
(2006~2011)



홈플러스PB
가슴기청정제
(2005~2011)



엔-위드
뉴트리아 / 클리나드 가슴기살균제
(2005~2011)



베지터블 홈
가슴기 클린업
(2005~2011)



롯데마트 PB
주부사랑 가슴기파트너 / 와이즐렉
(2003~2011)



세퓨
가슴기살균제
(2003~2011)



GS 함박웃음 가슴기 세정제 아토세이프 가슴기 항균제 헨켈 홈키파 가슴기 한번에 싹 맑은나라 가슴기살균제

살균닥터 정제형 살균제 등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보고

- '06년3~6월: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원인미상 소아 급성폐렴 15명 발생
- '08년 4월: 대한소아과학회지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게재
- '08년 7월: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 환자 78명, 이 중 36명 사망
- '09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지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게재
- '11년4월 서울아산병원 '중증폐렴 임신부 환자' 증가 신고 및 조사 요청
- '11년5월 일부 언론 '원인 미상 폐 질환으로 산모 연쇄 사망' 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현황

신청·접수 현황 (단위:명)

[2025. 1. 31. 기준]

구분	합계	생존	사망	소관부처	비고
합계	7,990	6,101	1,889	-	철회자 238명 포함
1차 피해조사 (11.11.11~13.06.30)	361	240	1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철회자 2명 포함
2차 피해조사 (14.04.11~14.10.10)	169	118	51	환경부, 환기원	-
3차 피해조사 (15.02.06~15.12.31)	752	655	97	환경부, 환기원	철회자 87명 포함
4차 피해조사 (16.04.25~20.09.24)	5,598	4,127	1,471	환경부, 환기원	철회자 147명 포함
5차 피해조사 (20.09.25~)	1,110	961	149	환경부, 환기원	철회자 2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지급현황

구제급여 지급 결정 현황 (단위:명)

구분	신청자(중복제외)	피해자	진행중		불인정	반려	철회
			신규	재심사			
합계	7,990	5,828	645	251	853	426	238
생존	6,101	4,499	384	190	613	388	217
사망	1,889	1,329	261	61	240	38	21

구제급여 지급내역 현황 (단위:백만원, 명)

구분	합계 (중복제외)	구제급여								기타		
		요양급여	요양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배상차액	진찰·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87,972	21,925	59,010	473	4,180	2,954	83,739	2,279	6,056	6,830	14	512
인원	4,381	3,420	1,433	185	135	22	867	867	78	31	56	47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기준 및 필요서류

○ 검토 서류

- 환경노출조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 검토 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나뭇잎에 대한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주요 구제 대상 신속판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노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단,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3.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급여

요양급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
요양생활수당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간병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
장해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전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

피해등급 기준 및 월 요양생활수당 지급금액

2. 검토 기준

가. 가슴기살균제 노출 여부

나. 가슴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다. 나목에 대한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건강피해등급	비고	
	폐기능 (FVC, FEV1, DLco)	지급금액
초고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별표 참고
고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이상~45% 미만	요양생활수당 금액 (2025년 기준) 법 시행령 [별표2]
중등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경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경미한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	

피해등급	월지급액	
	산정기준	금액(원/월)
초고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2,241,610
고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411에 해당하는 금액	1,616,320
중등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	1,077,540
경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	538,770
경미한 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96,630

등급 외

가습기살균제 피해 장해등급 및 급여수준

-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2025년 기준)

법 시행령 [별표4]

장해 등급	산정기준	급여금액(원/일시금)
초고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7,600에 해당하는 금액	226,521,100
고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560에 해당하는 금액	135,912,660
중등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3,040에 해당하는 금액	90,608,440
경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520에 해당하는 금액	45,304,220

참고: 살생물제품

1. 살균제류 (소독제류)

가. 살균제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

• 수영장 등 실내·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

•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보존제류 (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 다음의 재료·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 3) 금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4.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살생물제품피해구제 관련 급여

진료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피해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장애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피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외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액 (원/월)	112,080,7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500/1,000)	80,698,1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	53,798,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	26,899,3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기준	'25년 지급액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3,527,59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사망일시보상금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기준	'25년 지급액
장례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52,913,85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 석면은 악성종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 취급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석면피해구제 대상질환

석면피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에 노출될 경우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같은 석면질병을 발생시킴

*석면이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내화성, 내열성, 섬유성,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브레이크라이닝,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이 확인되어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 제조 및 사용 금지

대상
질환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주요 질환 인정기준

<표 질병별 석면피해 인정기준 - 원발성 폐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 1) 조직병리학적 검사
-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형(이하 "석면폐증의 병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μ m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국가정보포털, 기관지 폐포 세정액 1ml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284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가. 병형 판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초기형 및 진행형
- 나. 폐기능 장애판정은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를 모두 한 다음 3단계 구분(정상, 경도장애, 고도장애) 병형 및 장애판정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폐기능 장애의 판정기준

폐기능 장애 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애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석면폐증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병형	폐기능 장애
석면폐증1급	초기 또는 진행형	고도장애
	진행형	경도장애
석면폐증2급	진행형	정상
	초기형	경도장애
석면폐증3급	초기형	정상

석면피해구제제도 승인 건수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현황

(‘24. 12. 31. 기준,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소계	1급	2급	3급	
합계	석면피해	7,059	848	1,457	4,750	380	1,703	2,667	4
	특별유족	1,195	727	403	65	26	16	23	0
	소계	8,254	1,575	1,860	4,815	406	1,719	2,690	4
‘24년	석면피해	584	63	162	359	26	138	195	0
	특별유족	53	25	22	6	2	0	4	0
	소계	637	88	184	365	28	138	199	0
‘23년	석면피해	802	91	215	496	40	186	270	0
	특별유족	73	28	42	3	1	2	0	0
	소계	875	119	257	499	41	188	270	0
‘22년	석면피해	928	77	323	528	25	227	276	0
	특별유족	90	31	53	6	1	2	3	0
	소계	1,018	108	376	534	26	229	279	0
‘21년	석면피해	827	72	218	537	37	230	270	0
	특별유족	73	29	39	5	4	1	0	0
	소계	900	101	257	543	41	231	270	0
‘20년	석면피해	604	51	119	434	25	134	275	0
	특별유족	83	34	44	5	2	0	3	0
	소계	687	85	163	439	27	134	278	0

급여 종류	설명
요양급여	석면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 부담금
요양생활수당	석면 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장례비	석면 피해인정 후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법 시행 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자 또는 법 시행 후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지원
구제급여 조정금	석면피해 인정 후 사망한 경우, 지원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종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5년 기준 1,868,01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5년 기준 1,344,960원/월]	
석면폐증(2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25년 기준 896,640원/월]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3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5년 기준 448,320원/월]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25년도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			특별유족인정 신청		
	원발성 악성종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원발성 악성종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환경 노출 증빙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	○	○	○	○
	피해자(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기재)	○	○	○	○	○
	피해자 근무경력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표 등)	○	○	○	○	○
석면 질병 증빙 서류	진단서 (구제대상 석면질병 기재)	○	○	○	○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		○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영상자료 (CD로 제출)		○	○		○
	폐기능장애 검사서 (폐용적 그래프 포함)			○		○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서류 (해당자에한함)		○			○

신청 및 접수 절차

제도	신청·접수기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건강피해조사(청원)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		
피해구제	환경오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 제품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시·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제도	판정위원회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건강피해조사(청원)	환경보건위원회		
피해구제	환경오염		환경피해구제심의회
	살생물 제품	살생물제관리위원회	
	석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부 소속),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시·도지사 소속)로 구분

요약

- 환경재해 대상 주요 보상사례
 - 환경피해구제 (지역, 노출원 중심)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 석면피해구제
- 주된 판정 심의 사례
 - 폐암, 폐섬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및 석면관련질환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미만성흉막비후)
- 보상 이후 수령가능한 급여
 - 요양급여, 장애보상비, 생활수당, 유족급여, 장례비 등

제언

- 진료 중 환경노출에 대한 질문이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습니다.
- 바쁜 진료 중이라면, 주요 질환에 대한 환경 노출에 대한 질의 등은 소속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협진의뢰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가 없거나 외래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협진의뢰 부탁드립니다.

medical001@catholic.ca.kr

참고 사이트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피해구제제도안내

신청내용

원스톱서비스신청

자료실

알림마당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



환경분쟁조정



석면피해구제



환경오염
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청원

<https://www.ehtis.or.kr/onestop/contents/mainPage.do>

참고 사이트

📖 처음오셨나요?

구제급여지금 절차

나의 처리결과 조회

📢 공지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서비스 이용 제..

2025-01-23 < > ||

꼭!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 4/10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 전문 콜센터

피해구제제도 일반및개인상담은 1833-9085

